

제286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022. 4. 25.(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자 치 행 정 위 원 회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경과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패
영향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함으로써, 조례 각 조항의 부패
유발요인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안 제5조)
- 다.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 구체화(안 제6조)
- 라. 수탁기관 선정기준, 배점 등 사전 공개 및 선정결과 공개 규정 마련
(안 제8조)
- 마. 수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9조)
- 바.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 해촉)
마련 및 구체화 (안 제11조, 제12조)

사. 위탁 취소사유 구체화(안 제18조)

아.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안 제19조)

자.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안 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라. 입법예고 : 2022. 3. (7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등 3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포함한 조문 전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에 민간위탁을 고려할 경우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음은 물론 위탁 기간 및 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까지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는 의회 동의 예외규정과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 및 위원의 제척·기피 등 이해 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및 제21조에는 수탁사무에 대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은 본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52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그 동안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위탁사무의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한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수탁자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절차와 법적 근거가 제도화됨에 따라 민간위탁 제도의 도입 배경인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예외 규정 등 안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하여는 별도로 덧붙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의 ‘조례 개선 예시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모두 의회 동의 예외 규정으로 둘 경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능 약화와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전 동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 내 타 시·군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수의 시·군이 선별적으로 예외 규정을 운영하고 있기에 아래의 31개 시·군 민간위탁 조례의 예외 규정 현황 조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31개 시·군 의회 동의 예외 규정 파악 결과 >

- ※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 8개 시·군**
-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 20개 시·군
-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 14개 시·군

붙임 : 1. 경기도 시·군 민간위탁 조례 의회 동의 예외 규정 파악 현황

2.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

<의원자료실 별첨>

※ 경기도 시·군 순서 규정(인구수 기준)

경기도 시·군 민간위탁 조례 의회 동의 예외 규정 현황

50만 이상

순서	시·군	민간위탁 의회 동의 예외 규정 (의회 동의 생략)	
		예외 조항	내 용
	경기도 본청	○	1.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관리 사무 2.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 1억원 이하의 사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1	수원시	○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6.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2	용인시	×	-
3	고양시	○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단순 행정기관 사무인 경우 의회 동의 생략
4	성남시	○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단순 행정 관리사무
5	화성시	○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 받은 경우 3.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이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6	부천시	×	-
7	남양주시	○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8	안산시	○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4. 재계약 의회 상임위 보고한 경우
9	평택시	○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안양시	○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재위탁 또는 재계약 상임위 보고한 경우
11	시흥시	○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위탁금액이 4천만원 이하의 사무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12	김포시	○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이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13	파주시	×	-
14	의정부시	×	-

순서	시·군	민간위탁 의회 등의 예외 규정 (의회 등의 생략)	
		예외 조항	내 용
15	광주시	○	1. 개별 법령이나 기본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이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연간 위탁금액이 3억원이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16	광명시	×	-
17	하남시	○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18	군포시	○	1. 개별 법령이나 기본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연간 위탁금액이 3억원이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19	오산시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5.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의 사무 6. 재난, 재해 대응 등 공공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20	양주시	×	-
21	이천시	×	-
22	구리시	○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2. 위탁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사무
23	안성시	○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4	의왕시	○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이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25	포천시	×	-
26	양평군	×	-
27	여주시	○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 받은 경우
28	동두천시	○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9	과천시	○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0	가평군	○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의회 보고하는 것으로 같음
31	연천군	○	1. 개별 법령이나 기본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이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동 조례 개정 후에도 세출 및 세입의 증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사항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행정기획실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